

「부록 1」 건물 온실가스 총량 규제 관련 법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건축물 목표 에너지 원단위 설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등)

- 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목표량(“목표에너지원단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 소비 총량 관리 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p>제11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 에너지총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하 생략) 	<p>제8조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서 정하는 목표량의 범위에서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려면 그 내용을 지방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 30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하게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하 생략)
<p>제12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축물 부문의 중장기 및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p>제9조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축 건축물 및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려면 그 적용대상과 허용기준 등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부록 2]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샘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한신아파트	준공연도	1998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115동 115동 호 (돈암동, 한신아파트)		
	면적/전용면적	11,126 m ² / 113.67 m ²	주용도	공동주택
건 축 물 에 너지 효 율 인 증 내 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시행규칙」 제17부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사용등급					
에너지효율 높음			건축물연간에너지사용량				
에너지효율 낮음	← 위쪽	<table border="1"> <tr> <td>난방 연료</td> <td>47.7 kWh/m²·년</td> </tr> <tr> <td>에너지 사용량</td> <td>117.2 kWh/m²·년</td> </tr> </table>	난방 연료	47.7 kWh/m ² ·년	에너지 사용량	117.2 kWh/m ² ·년	
난방 연료	47.7 kWh/m ² ·년						
에너지 사용량	117.2 kWh/m ² ·년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에너지사용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²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m ² ·년)					
구분	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사용량				
난 방	1차에너지소요량	도시가스 (a)	117.2				
급 열		지역난·난방 (b)	0				
냉 방		합 계 (a+b)	117.2				
조 열		정 기 (c)	47.7				
총 계		합 계 (a+b+c)	164.8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온실가스 배출량 (kg/m ² ·년)	43.5				
표준에너지사용량 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99.5	100.1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101.6	105.8				

* 최근 4분기 동안 에너지사용량 비율은 5.5%p 변동되었으며 24.6kWh/㎡·년을 줄이면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됩니다.

2020년 04월 22일



210m X 297m (부종용지(1종) 120g/㎡)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 공동주택 [] 업무시설

건 축 물 현 황	건축물명	한신아파트	준공연도	1998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107동 호 (돈암동, 한신아파트)		
	면면적/전용면적	28,462 m ² / 68.13 m ²	주용도	공동주택
건 축 물 에 너 지 효 율 인 증 내 역	인증등급	인증번호		
	인증일	인증기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취득 정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효율 높음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에너지사용량등급

건축물연간에너지사용량

시설 면적수	3주단 300~1000㎡
연기사용량	47.7 kWh/㎡·년
냉사 사용량	117.2 kWh/㎡·년

저에너지건축물 등급			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 (kWh/㎡·년)		
구분	에너지소요량	1차에너지소요량	구분	에너지사용량	1차에너지사용량
난 방			도시 가스 (a)	117.2	128.9
급 열			지역 난·냉방 (b)	0	0
냉 방			합 (a + b)	117.2	128.9
조 명			합 (c)	47.7	131.1
총 계			합 계 (a + b + c)	164.8	259.9
온실가스 배출량 (kg/㎡·년)			온실가스 배출량 (kg/㎡·년)	43.5	

표준에너지사용량 대비 에너지사용량 비율(%)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2019년 4분기
		94.6	95.7	96.3

* 최근 4분기 동안 에너지사용량 비율은 4.7%p 변동되었으며 17.3kWh/㎡·년을 줄이던 등급이 한 단계 개선됩니다.

2020년 04월 22일



210mm X 297mm (복합용지(1:1) 100g/㎡)